

ESG위원회규정

3-1-36

규정번호	3-1-36
제정일자	2024.1.24
최근개정	2026.2.6
개정차수	1차
관리부서	기획평가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ESG(Environment Social Governance) 정책 수립과 관련 실행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
2. 환경/생태계 보호와 사회공헌 활동 성과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향 자문
3. ESG 정책 연구 및 보고서 발간
4. ESG 정책 추진 관련 주요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권고
5. 그 밖에 ESG에 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6.2.6.)

-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으로 한다.
- ③ 전문위원은 ESG 관련 경륜과 학식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로 위촉한다.
- ④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 역할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<삭제(2026.2.6.)>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- ② 천재지변, 기타재해나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화상회의 화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록 서명란을 대체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행정부서 실무자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.

- ② 실무위원은 ESG업무 추진, 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처리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(개정 2026.2.6.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3-1-36 ESG위원회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, 제4조제2항, 제8조)